

# 2015                    보고서

일시 : 2015. 2. 6 (금) 11:00

\* 장소 : 거룩한빛광성교회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705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servekorea.org](http://www.servekorea.org)    [kdkd1225@hanmail.net](mailto:kdkd1225@hanmail.net)

# 목 차

● 2015	순서	.....	3
● 2015	정기총회 순서	.....	4
A. 조직			
1.	회원명부	.....	5
2.	법인이사명부	.....	7
3.	임직원명부( )	.....	8
B. 회의록			
1.	총 회	.....	11
2.	이사회	.....	12
C. 2014년 사업보고			
.....			
13			
D. 2014년 감사보고			
.....			
34			
E. 2014년 결산보고			
.....			
36			
F. 2015년 사업계획			
.....			
38			
G. 2015년 예산(안)			
.....			
47			
H. 부록			
1.	정관	.....	48
2.	회칙	.....	55

# 개회예배

■ : 2015. 2. 6 (금) 11시

■ 인도 : 정성진 목사 (상임이사)

찬 양 .....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 로데중창단 (거룩한빛광성교회)

목 도 ..... 다 같 이

찬 송 ..... <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다 같 이

1.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 도 ..... 한태수 목사 (상임단장)

말 씬 .....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 ..... 오정현 목사 (WD 이사장)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2~47>

특 송 ..... <목마른 사슴> ..... 로데중창단 (거룩한빛광성교회)

찬 송 ..... <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 ..... 다 같 이

1.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후렴 : 한걸음 한걸음 주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 도 ..... 손인웅 목사 (기사협 이사장)

# 정기총회

■ :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 공 연 ..... 장효선 집사 (거룩한빛광성교회)
1. 의장인사
  2. 회원점명
  3. 회순채택 ..... 다 같 이
  4. 2014년도 사업보고(p.13) ..... 정성진 목사 (상임이사)
  5. 2014년도 감사보고(p.34) ..... 김광한 장로 (감 사)
  6. 2014년도 결산보고(p.36) ..... 이창연 장로 (회 계)
  7. 2015년도 사업계획(p.38)/예산(안)보고(p.47) ..... 정성진 목사 (상임이사)
  8. DIAKONIA KOREA 2015년 사업계획보고(p.42) ..... 정성진 목사 (상임이사)
  9. DIAKONIA KOREA (엑스포) 조직위원회 주요임원 위촉(p.45)
  10. 사무총장 취임
  11. 유관 및 동역기관 인사 ..... 천영철 목사 (사무총장)
    - 엔젤만신드롬가족모임 남궁명희 회장
    - 안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박성현 사무국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 동자동 사랑방공제협동조합 이태헌 이사장
    - 태풍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파병 필리핀합동지원단장 이철원 대령 (代 군종참모 정한진 목사)
  12. 기타안건 ..... 회 원 중
  13. 광 고 ..... 천영철 목사 (사무총장)
  14. 폐회기도 ..... 김경원 목사 (공동대표)

# A.

## 1.

(세계빈곤퇴치회)	김성원(광주중흥교회)	김형준(동안교회)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의회)	김성철(백석대사회복지학과)	김혜경(백석대사회복지학과)
강영만(진흥교회)	김수웅(한국기독실업인회)	김호민(대전권능교회)
강용규(한신교회)	김수지(서울사이버대학교)	김흥규(인천내리교회)
강인석(시흥평안교회)	김영수(영일교회)	나진균(월곶제일감리교회)
강준모(남성교회)	김영진(민주통합당)	노승숙(전 국가조찬기도회)
강춘길	김영철(장수마을교회)	노태철(제일성결교회)
고경환(순복음원당교회)	김영현(은평감리교회)	단필호(기독교연합봉사회)
고명성(추점교회)	김요셉(선린교회)	류두현(나사렛교회)
고미란(푸른잎사귀봉사단)	김요셉(원천(침례)교회)	류영모(한소망교회)
곽주환(베다니교회)	김용상(원주제일교회)	류종훈(한세대사회복지학과)
구자영(안성성결교회)	김원광(중계총성교회)	림형석(평촌교회)
권오륜(발음교회)	김원교(참좋은교회)	명성훈(순복음성서교회)
권태경(백합노인복지센터)	김원호(석삼침례교회)	모상련(목포주안교회)
권태경(영동은혜교회)	김유수(광주월광교회)	문강원(원천교회)
길자연(한기총, 양성교회)	김윤석(좋은이웃교회)	박경배(송촌장로교회)
김경수(안동벚엘교회)	김은기(전 극동방송)	박광석(일산벚엘교회)
김광본(연합총회)	김은섭(도봉교회)	박권배(상도교회)
김광석(❷)참존회장	김은호(오륜교회)	박귀영(한영신대사회복지학과)
김근상(서울주교좌성당)	김인기(성장교회)	박동찬(일산광림교회)
김근중(수원늘푸른교회)	김인중(안산동산교회)	박래창(예장통합총회사회봉사부)
김대근(숭실대학교)	김인환(성은감리교회)	박명성(성신교회)
김덕주(기독교선교햇불재단)	김일환(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박삼열(송월교회)
김동권(진주교회 원로목사)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박상완(신갈백향목교회)
김득린(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정서(제주영락교회)	박상철(예일교회)
김득연(동성진흥)	김정석(광림교회)	박성민(한국CCC)
김명현(이천순복음교회)	김정일(한국노인대학총연합회)	박성철(신원그룹)
김문훈(포도원교회)	김종엽(가현교회)	박순영(장충단교회)
김민섭(한국의료복지선교회)	김종용(부평제일교회)	박용호(복수원교회)
김범곤(예수사랑선교회)	김종준(꽃동산교회)	박원호(주님의교회)
김병민(충남동산교회)	김종훈(월곡교회)	박유철(충주서남교회)
김병삼(만나교회)	김준수(성덕중앙교회)	박윤석(청주우암교회)
김봉태(수원영원교회)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박응순(주안중앙교회)
김상길(기하성총회협동총무)	김찬곤(안양석수교회)	박정근(부산영안침례교회)
김상복(소망교회)	김창배(영광교회)	박종순(충신교회)
김상현(부광교회)	김철봉(부산사직동교회)	박종언(예장합신총무)
김선도(광림교회 원로목사)	김치성(통합교육부총무)	박종천(가나안의집)
김성수(예장대신사회부)	김한중(연세대학교)	박지태((재)장기재산기증협회)
김성식(순복음부흥교회)	김해성(지구촌사랑나눔)	박진구(안디옥교회)

(기쁨의교회)  
 박창환(꿈꾸는교회)  
 박천웅(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일(전CTS사무)  
 박철규(새마음교회)  
 박현식(대길교회)  
 박흥철(분당매일교회)  
 방수성(시흥교회)  
 방원철(성광교회)  
 배성식(수지영락교회)  
 배숙한(종교감리교회)  
 배운규(한국기독교사회복지관협회)  
 배진기(포항안디옥교회)  
 백광진(잠실동교회)  
 백인범(새사랑교회)  
 백종윤(청학영락교회)  
 서경기(한아봉사회)  
 서도형(흥은교회)  
 서임중(포항중앙교회)  
 서정오(동송교회)  
 서철(상동교회)  
 서호석(창천교회)  
 성열준(부산디지털대학교)  
 성장용(충무교회)  
 손달익(서문교회)  
 송귀옥(목포영락교회)  
 송기식(수원성결교회)  
 송태근(강남교회)  
 신동현(영락사회복지재단)  
 신상현(울산미포교회)  
 신성남(예수가족교회)  
 신용한(국제기독교실업인회)  
 신정호(동신교회)  
 신화석(안디옥성결교회)  
 안강희(GAP국제대표)  
 안기성(거리의천사들)  
 안요셉(글로리아교회)  
 안용운(온천교회)  
 안희목(공주꿈에교회)  
 양세진(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양인평(로고스법무법인)  
 양재성(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해규(굿일스토어)  
 어덕선(열방교회)  
 엄신형(중흥교회)  
 엄현섭(기독교한국루터회)  
 여성삼(천호동교회)  
 오영택(월드비전교회)  
 오진석(하나성결교회)  
 옥성석(충정교회)  
 원준희(사도교회)  
 원팔연(전주바울교회)  
 유관재(성광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유만석(수원명성교회)  
 유성희(대한YWCA)  
 유영완(하늘중앙감리교회)  
 유인석(과천소망교회)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육광철(예정합정사회복지위원회)  
 육순중(성복교회)  
 윤석전(연세중앙교회)  
 윤성원(삼성제일교회)  
 윤재철(대구중앙교회)  
 윤지환(안보와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윤호균(화광교회)  
 윤희구(창원한빛교회)  
 이강호(봉천성결교회)  
 이건영(인천제2교회)  
 이경림(전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경희(윤영노)(하늘중앙교회)  
 이규석  
 이규왕(수원제일교회)  
 이규환(부천목양교회)  
 이근수(흥성교회)  
 이기우(감람교회)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이상일(삼선교회)  
 이성우(미국LA우리민족돕기)  
 이수영(새문안교회)  
 이순천(안중양교회)  
 이승영(새벽교회)  
 이승희(반야월교회)

이신웅(신길교회)  
 이영식(분당영광교회)  
 이용호(서울영천교회)  
 이인선(열림교회)  
 이재옥(화평교회)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이재창(수원순복음교회)  
 이재천(CBS기독교방송)  
 이재훈(은제교회)  
 이정우(지구촌교회사회복지부)  
 이세훈(어린이재단/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종관(울산시민교회)  
 이종윤(서울교회)  
 이종현(기독교연합봉사회)  
 이주형(오정성화교회)  
 이준성(역촌교회)  
 이준우(강남대사회복지학과)  
 이철호(강성교회)  
 이치우(합동)  
 이태훈(수원동부성폭력상담소)  
 이학영(한국YMCA)  
 임석영(고덕중앙교회)  
 임영섭(수원은혜교회)  
 장빈(동광교회)  
 장경덕(가나안교회)  
 장덕만(동암교회)  
 장덕순(이리신광교회)  
 장봉생(서대문교회)  
 장영일(범어교회)  
 장윤제(한국복지목회협의회회장)  
 장희열(순복음부평교회)  
 전광표(구세군대한본영)  
 전병금(강남교회)  
 전삼광(인천내동교회)  
 전성원(한기총공동회장)  
 전숙희(한국민족문화교육원)  
 전윤원(석천광명교회)  
 전현표(상동사랑교회)  
 정권(예가원)  
 정근두(울산교회)  
 정근모(한국전력공사 고문)  
 정덕훈(영광교회)

(도림교회)	조재호(고척교회)	최임곤(신일교회)
정명호(혜성교회)	조한권(전하리교회)	최종천(분당중앙교회)
정무성(송실대사회복지학과)	조흥식(서울대사회복지학과)	최총하(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무)
정승룡(늘사랑교회)	주경선(밀알의집)	최한주(푸른숲교회)
정신천(한국장로교복지재단)	주현신(과천교회)	최홍규(가리봉교회)
정연철(양산삼양교회)	지관해(서울복음교회)	추연호(은파교회)
정영교(산본양문교회)	지성업(대전산성교회)	하금석(예랑교회연안선교회)
정영환(기독교IPTV)	지형은(성락성결교회)	하상훈(생명의전화)
정우겸(완도성광교회)	차정규(신양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정우담(예성총회사회복지부)	채영남(본향교회)	한준석(세종제일교회)
정주재(향상교회)	채이석(비전교회)	한진환(서문교회)
정철옥(아름다운교회)	최길학(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허태성(강변교회)
정필도(수영로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현해춘(등마루교회)
정현구(서울영동교회)	최대석(일산소망교회)	홍문수(신반포교회)
조경열(아현교회)	최병국(총회세계선교회복지위원장)	홍향표(경목총회사무총장)
조남선(베푸는공동체)	최부옥(양무리교회)	황문찬(세검정교회)
조석인(사랑과행복나눔재단)	최성재(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황선엽(구세군대한본영)
조성철(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완규(영천감리교회)	황영일(기독교IPTV)
조원근(아현교회)	최용준(보성읍교회)	황우여(한나라당)
조이철(기성사회복지협의회)	최일도(다일복지재단)	(* 순)

## 2. 이사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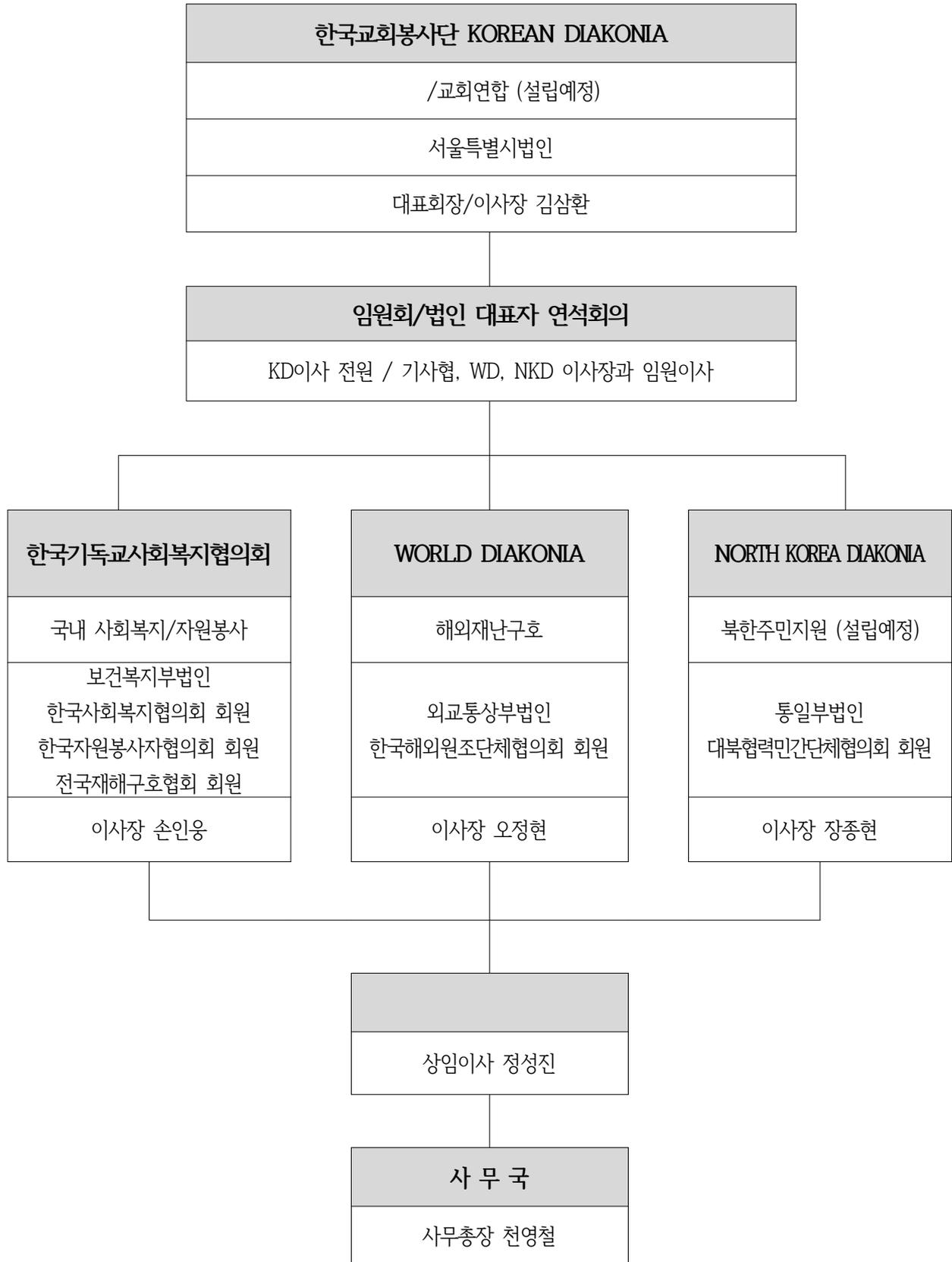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김경원(서현교회)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삼환(명성교회)	김성이(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종생(온양제일교회)
민경자(전 전국여전도회연합회)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박종삼(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손인웅(덕수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이규학(인천제일감리교회)	장경준(한우리교회)	조규환(엔젤스 헤븐)
지형은(성락성결교회)	최이우(종교교회)	최희범(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태수(은평성결교회)	(*가나다 순)	

3. 명부( ) (\*교단 가나다순)

	교단	성명	직분/직책	소속
고문	기 감	신경하	목사	감리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이종복	목사	은혜감리교회 원로목사
	기 성	이정익	목사	신촌성결교회
		조종남	목사	장충단 성결교회 명예목사
	기 침	김장환	목사	FEBC 극동방송 이사장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기하성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최성규	목사	인천순복음교회
	독 립	김상복	목사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복 음	전병호	목사	군산나운복음교회
	성공회	박경조	주교	대한성공회 前광구장 주교
	통 합	고훈	목사	안산제일교회
		고용수	목사	전 대구제일교회
		림인식	목사	(통합) 증경총회장
		박래창	장로	전 예장통합 사회봉사부장
		안영로	목사	광주서남교회
	합 동	서기행	목사	(합동)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	온천제일교회 원로목사
	합 신	김명혁	목사	강변교회 원로목사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 남북나눔
	기 관	감경철	회장	CTS기독교tv
		김명규	장로	C채널 사장
		손봉호	장로	서울문화포럼 대표(전)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	
이흥순		장로	한국장로교육원 원장	
상임고문	기 성	최희범	목사	한국교회봉사단
대표회장	통 합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
이사장	통 합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원로목사
	합 동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백 석	장종현	목사	(백석)총회장
공동대표	고 신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	구세군대한본영
	기 감	송기성	목사	정동제일교회
	기 성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기 장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서재일	목사	원주영강교회
	기 침	피영민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기하성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백 석	양병희	목사	영안교회
	예장합정	김양원	목사	신망애복지재단 대표

	합	이성희	목사	연동교회
		이철신	목사	영락교회
		조성기	목사	송실 통일리더십연수원
		진희근	목사	승리교회
	합 동	김경원	목사	서현교회
		최홍준	목사	부산호산나교회 원로목사
	합 신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기 관	김동배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종삼		목사	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상임단장	기 감	최이우	목사	종교감리교회
	기 성	한태수	목사	은평성결교회
	기 장	이운재	목사	분당한신교회
	기 침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기하성	김봉준	목사	구로순복음교회
	백 석	유만석	목사	수원명성교회
	통 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서정오	목사	동승교회
	합 동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오정호	목사	새로남교회
상임이사	통 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기획위원	개 혁	장현승	목사	과천소망교회
	고 신	이성구	목사	한목협 상임총무
	기 성	우순태	목사	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
	기하성	김창곤	목사	서초순복음교회
		최명우	목사	순복음강남교회
	통 합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이승열	목사	예정(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주현신	목사	과천교회
	합 동	송종완	목사	수원삼일교회
		이상화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효상		목사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기 감	한상업	장로	기독교연합봉사회	
서 기	통 합	김종생	목사	온양제일교회
부서기	기 성	박순영	목사	장중단교회
회 계	통 합	이창연	장로	스포츠서울INB
부회계	기하성	박홍자	장로	맛샘캐터링
감 사	기 관	김광한	장로	김광한세무사회계사무소
		임성이	장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사무총장	통 합	천영철	목사	한국교회봉사단
지 회	강원남부, 경기남, 경기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경남, 서울, 울산, 인천, 충남, 충북			

한국교회봉사단(KOREAN DIAKONIA) 조직도



## B.

### 1. 회의록

#### 총회 회의록

2014 2월 21일(금) 16:00-17:05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

##### ■ 개회예배

상임단장 겸 이사 오정현 목사의 사회로 묵도 후 찬송 3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을 제창과 상임단장 겸 이사 한태수 목사의 기도 후, 이사장 손인웅 목사가 설교하다.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5절을 제창 후 인천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이종복 감독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친다.

##### ■ 정기총회

###### 1. 의장인사

대표회장 겸 이사 김삼환 목사가 의장인사를 하다.

###### 2.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상임단장 겸 이사 최이우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41명중 23명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 3. 회순체택

의장이 회순체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4. 2013년 사업보고

사무총장 겸 이사 김종생 목사가 2013년 사업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5. 2013년 감사보고

감사 김광한 장로가 2013년 감사 결과를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6. 2013년 결산보고

회계 이창연 장로가 2013년 결산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7.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사무총장 겸 이사 김종생 목사가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8. 이사회 부의안건

가. 일부 이사 임기가 만료 및 만료예정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이사중임 : 박은조(임기 2014. 07. 10 ~ 2017. 07. 09)

이규학(임기 2014. 05. 28 ~ 2017. 05. 27)

이영훈(임기 2014. 05. 28 ~ 2017. 05. 27)

이사신임 : 김경원(임기 2014. 07. 10 ~ 2017. 07. 09)

###### 9. 사무총장 이임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가 이임하게 되니,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다.

###### 10. 폐회

의장이 기타안건 여부를 물으니 없느니라, 폐회를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상임단장 김경원 목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오후 5시 5분이었다.

2014년 2월 21일

## 2.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2014 2월 21일(금) 15:15-15:55 사랑의교회 8층 대접견실

#### ■ 경건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사회로 묵도 후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제창한 후,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다같이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친다.

#### ■ 회의

##### 1. 회원점명 및 개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사회로 이사 최이우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9명 위임 5명 배석 3명으로 정관 24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니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다.

참석 : 손인웅 김삼환 김성이 김종생 박종삼 오정현 최이우 최희범 한태수

위임 : 고명진 김동배 이규학 이영훈 지형은

배석 : 김경원(상임단장) 김광한(감사) 박승철(사무국장)

##### 2. 전회의록 채택

이사 김종생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3. 총회 보고사항 심의

가. 2013년 사업보고를 이사 김종생 목사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2013년 감사 및 결산보고를 감사 김광한 장로가 낭독하니, 서면으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 김종생 목사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4. 총회 부의사항 심의

가. 임기 만료 및 만료 예정된 4명 이사 중, 사의를 표명한 우창록 이사를 제외한 3명의 연임을 총회에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임기만료 및 만료 예정 이사 : 박은조 우창록 이영훈 이규학

총회 연임추천 이사 : 박은조 이영훈 이규학

신임 이사 : 김경원

##### 5. 기타

가. 법인소유 재산 차량의 소유권 인계를 아래와 같이 허락하다.

○ 차종 및 차량번호 : 그랜드카니발 71부6840

○ 인계기관 : 한국원폭2세환우회 (611-82-63363)

나. 김종생 목사의 사무총장 사임을 허락하고, 후임 사무총장의 선임을 손인웅 이사장, 김삼환 이사, 오정현 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6. 폐회

오정현 이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오후 3시 55분이었다.

2014년 2월 21일

## C. Korean Diakonia 2014 사업보고

### 1.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2차 집중과정

가. 주제 :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만들기

나. 대상 : 디아코니아에 관심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다. 일시 : 2014년 1월 6일(월) ~ 8일(수) 10:00 ~ 17:00

라. 장소 : 영락교회 봉사관 504호

마. 주최 :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목회사회학연구소

바. 일정

	6일(월)	7일(화)	8일(수)
10:00~11:00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필요성(1)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과 방법론(1)	지역공동체 현장이야기(2)
11:00~12:00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2)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필요성(2)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1)	지역조사 발표회 및 수료식
14:00~15:00	지역교회와 지역공동체 세우기		
15:00~16:00			
16:00~17:00			

#### 사. 커리큘럼

- 여는 예배, 오리엔테이션
  - 목표 | 참가자들과 진행자들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 강의 |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필요성 / 조성돈 교수(목회사회학연구소)
- 지역교회와 지역공동체 세우기
  - 목표 | 본 과정의 핵심가치를 설명하고 이론 배경 강의
  - 강의 | 정재영 교수(목회사회학연구소)
-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과 방법론
  - 목표 | 교회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설명
  - 강의 | 임성규 목사(서울복지재단)
-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
  - 목표 | 지역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소개
  - 강의 | 조성돈 교수 - 사회적 경제의 신학적 차원  
정재영 교수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 지역공동체 현장 이야기
  - 목표 |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룬 교회 현장 사례
  - 강의 |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김문건 목사(신광교회), 손주완 목사(작은예수공동체)

## 지역조사 발표회

목표 | 지역조사와 사회복지사, 주민자치위원장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idea paper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종합토론 토론 및 수료식

## 2. 조직개편

가. 개편일시 : 2014년 1월 20일

나. 내 용

- (1) 고 문 : 최성규, 나겸일, 전양철, 임형재
- (2) 대 표 회 장 : 이종복 감독
- (3) 공동대표회장 : 조일래 총회장(예성), 장희열 증경총회장(기하성), 박동일 총회장(기장), 이규학 임시감독회장(기감), 장원기 전총회장(백석), 신덕수 총회장(인기총), 신선하(인기장총)
- (4) 공 동 회 장 : 최정성 전총회장, 서명섭 전총회장, 박삼열 전총회장, 조춘혁 전총회장, 장자옥 전총회장, 최광영 전총회장, 안길선 전총회장, 김길수 전총회장, 이일성 전 인기장총 총회장, 이중남 전 인기장총 총회장, 최 영 전 인기장총 총회장
- (5) 회 장  
사회봉사회 : 회장/간수웅, 부회장/권영규 고정선, 사무처장/최종철  
한국봉사회 : 회장/윤석호, 부회장/김주하 유재성, 사무처장/손창화, 서기회계/문상훈 유병철  
북한봉사회 : 회장/김명완, 부회장/이충호 최장순, 사무처장/최신성  
세계봉사회 : 임원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종복 대표회장이 총괄하여 타 임원들과 함께 수행
- (6) 사 무 총 장 : 양희만 목사

## 3. 2014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 사랑 큰잔치

가. 일 시 : 2014년 1월 30일(목) 11:00-15:00

나. 장 소 : 동자동 소재 새꿈놀이터

다. 대 상 : 용산구 동자동 거주 1천여 세대 쪽방주민들

- 라. 내 용 : (1)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잔치음식 나눔  
- 쇠고기무국, 김치, 불고기, 잡채, 오징어숙회, 나물, 샐러드, 전 류 등  
(2) 설날 놀이마당  
- 윷놀이, 장기, 노래자랑 등  
- 경품 및 상품 증정

마. 공동주최 :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동자동사랑방공제협동조합

## 4. 2014년 사랑과 정성을 담은 쌀 나눔 행사

가. 취지 : 민속명절을 맞이하여 사회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쌀 지원사업 실시

나. 대상 : 인천지역 독거노인 및 수급자

다. 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인천지회

- . 후원 : sk텔레콤
- 마. 지원 : 온누리상품권 50,000원 \* 48매 = 2,400,000원

## 5. 세우기 일본 탐방

- 가. 일 시 : 2014년 2월 12일(수) ~ 15일(토)
- 나. 장 소 : 일본 큐슈지방
- 다. 공동주최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목회사회학연구소
- 라. 내 용 : 일본 지역 공동체 세우기 현장을 방문하여 일본 지역공동체와 한국 사례의 비교 집중 토론
- 마. 견 학 지 : NPO법인 순환생활연구소, 그린코프, 치쿠고강 유역 연계클럽, 우키와시 요시이마치 등.
- 바. 참 석 : 강일구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사랑누리교회)  
 고훈규 회장 (세계선교회)  
 김동진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맑은샘교회)  
 김연성 목사 (대구다문화교회)  
 김옥경 전도사 (엠마오선교센터)  
 김주선 목사 (덕풍교회)  
 나선우 청년 (수인중앙교회)  
 박정현 집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박홍래 목사 (밀알침례교회)  
 손 훈 목사 (영화교회)  
 이영훈 목사 (높은뜻하늘교회)  
 장도영 본부장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  
 장진원 기획실장 (목회사회학연구소)  
 전용림 본부장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정광석 기자 (CBS기독교방송)  
 정연희 사모 (대구다문화교회)  
 정재영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제호 사무처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최경배 기자 (CBS기독교방송)  
 홍순범 목사 (산정현교회)

## 6. 2014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 가. 개요

- 1) 캠페인명 : 2014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 2) 일 시 : 2014년 4월 20일(부활주일 겸 장애인주일)
- 3) 대 상 : 전국 쪽방촌 주민과 장애우 등 경제취약계층 4천여 세대  
 (가) 전국 쪽방촌 주민 3천여 세대  
 - 서울 동자동, 영등포, 돈의동, 창신동 등 쪽방촌 주민

- , 인천, 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 쪽방촌 주민

(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장애우 등 경제취약층 주민

4) 내 용 : (가) 부활절 달걀(구운달걀) 1세트(10알) 전달

(나) 대상가정 중 장애우 가정 심방 및 지원금(혹은 선물) 전달

#### 나. 사업결과

##### 1) 부활절 달걀 나눔 참여 단체 및 교회

###### (1) 동자동

(가) 대상가구 : 1,000세대(동자동, 갈월동, 남대문경찰서 뒤, 성민교회출석교인)

(나) 자원봉사 : 35명(은평성결교회 15명, 덕수교회 10명, 성민교회 10명)

(다) 심방대상 : 3가정 주거비지원

김순례(93세, 장애인 아들과 동거 중), 박철용(62세),

이경숙(64세, 다리골절 치료중)

(라) 부활절(4월 20일) 오후 진행 순서

3:00 집 합 / 용산구 동자동 6-1 성민교회

오리엔테이션 / 진행설명, 조 나눔, 역할 분배, 안내-성민교회 및 KD직원

3:30 달걀 나누기

4:20 심 방 / 손인웅 목사, 한태수 목사, 이성재 목사, 박승철 목사

5:00 마무리 / 지역을 위한 기도

###### (2) 돈의동

(가) 대상가구 : 750세대

(나) 자원봉사 : 10명,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유니게의집

(다문화 결혼 이주민, 한국인 친정엄마 결연자)

(다) 부활절(4월 20일) 오후 진행 순서

3:50 집 합 / 종로구 돈의동 162번지 종로 쪽방상담센터

오리엔테이션 / 진행설명, 조 나눔, 역할 분배, 안내-KD직원

4:00 달걀 나누기

4:40 심 방 / 이화순 소장, 전해선 목사

5:20 마무리 / 지역을 위한 기도

###### (3) 창신동

(가) 대상가구 : 350세대

(나) 자원봉사 : 등대교회

(다) 부활절(4월 20일) 오후 진행

등대교회 오후 예배 후 김양옥 목사 안내로 교인들과 함께 나눔.

###### (4) 기타

(가) 부산동구쪽방지역 350세대, 인천동산비전센터 다문화가정 100세대

(나) 난치성질환자-엔젤만증후군 50명

(다)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 7. 지원 프로그램

- . 일 시 : 2014년 4월 -11월
- 나. 대 상 : 연수구, 남동구 지역 취약계층
- 다. 내 용 : 종합복지 상담 및 도시락배달, 자활센터 연계(일자리)
- 라. 주 관 : 인천지회-인천희망봉사단 사회복지봉사회(회장 간수웅 목사)

## 8.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족 돌봄 사업

### 가. 개요

- 1) 사건발생 : 2014년 4월 16일 인천출발 제주행 476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 2) 피해규모 : 사망294명(안산 단원고 사망자262명, 일반인 사망자 43명)  
실종10명, 구조172명 (9월 15일 기준)

### 나. 사업 보고

- 1) 진도 팽목항 실종자가족 위로 방문
  - (가) 방문일 : 4월 17일(목)~18일(금)
  - (나) 내 용 : 진도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심방  
팽목항 긴급구호를 위한 부스 확인 및 관계자 미팅
- 2)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모임
  - (가)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교계지도자 모임
    - 일시 : 2014. 5. 5(월) 7:00
    - 장소 : 잠실롯데호텔 3층 에머럴드홀
    - 내용 :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발족결의  
안산제일교회 세월호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개최 결의
  - (나)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실무 진행회의
    - 일시 : 2014. 5. 7(화) 7:30
    - 장소 : 정동 달개비
    - 내용 : 5월 9일 개최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안산제일교회) 순서 및 인원동원 논의
  - (다)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확대 전체모임
    - 일시 : 2014. 5. 22(모) 7:30
    - 장소 : 잠실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 내용 : 조직보고, 모금진행, 호소문 확정, 서울지역 기도회 개최
  - (라) 진도 팽목항 방문
    - 일시 : 2014. 6. 4(수)
    - 내용 : 진도기독교연합회 회장 미팅, 기독교 부스 방문
  - (마)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조직구성
    - \* 고 문 : 림인식 김선도 김장환 서기행 김명혁 장차남 박종순 김동권 신경하 박경조 장상
    - \* 자문위원 : 한영훈 신경하 김순권 안영로 홍정이 유의웅 최성규 장종현 한헌수  
언론사 자문위원 : 주요 언론사 사장 등
    - \* 위 원 장 : 김삼환

\* 위원장 : 이영훈 김종훈 지용수 이신웅 최낙중 양병희 김경원 서재일 권태진 유만석 김정서  
고 훈 오정현 서임중 오정호 박성철 이봉관 김명규 김승규

\* 기획위원회

- 위원장 : 손인웅 최희범 소강석
- 위 원 : 권오성 고세진 최일도 이승한 최 인 한기봉 장형준
- 총 무 : 김종생 이상화 이성철

\* 실행위원회

- 위원장 : 정성진 한태수 고명진 유재명
- 위 원 : 유종만 김태영 강용규 이순창 김재영 이치우 우순태 원영오 조성재
- 총 무 : 이경옥 이효상

\* 서 기 : 최이우

\* 회 계 : 김명규

\* 사무총장 : 조성기 이치우

\* 실무간사 : 박승철

3) 세월호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가) 일 시 : 2014. 5. 9 (금) 21:00-23:00

(나) 장 소 : 안산제일교회

(다) 순 서

사 회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대표기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래 목사

성경봉독 : 구약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임성이 장로

신약 /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심영식 장로

설 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안명환 목사

한국교회의 죄책고백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 외 공동총무단

위로메시지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감독

인 사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현장증언 :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

호소문 낭독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

봉 헌 : 다같이 / 박주옥 임경애 교수(백석대)

봉헌기도 :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장 김명규 장로

중보기도 : 인도 / 안산시기독교연합회장 유재명 목사

1. 실종자들을 위하여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2.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여 /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대현 목사

3. 생존자와 가족들, 안산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 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

4. 구조자들의 안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5.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 미래목회포럼 前이사장 정성진 목사

축 도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

4)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가) 일 시 : 6월 1일(주일) 19시

(나) 장 소 : 명성교회

(다) 순 서

여는말씀 : 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前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前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②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예배인도 :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위원장 김삼환 목사

대표기도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

성 경 : 송실대학교 한헌수 총장 <고린도후서 1장 1절 ~ 4절>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임성이 장로 <시편 62편 2절 ~ 5절>

설 교 : 위로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 “모든 위로의 하나님”

회복 / 세계침례교연맹 前회장 김장환 목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로의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첼리스트 정명화 교수

추 모 시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세월호 회복 모금 취지설명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법인이사장 손인웅 목사

봉헌기도 :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장 김명규 장로

봉 헌 송 : 위로의노래 / 백석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박주옥 목사

성금전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前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안산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재명 목사에게

중보기도 : 인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前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前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1. 실종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2. 생존자와 가족들, 안산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증경총회장 권태진 목사

3.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단척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상임단장 한태수 목사

4. 한국교회의 회개와 연합과 일치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5.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 미래목회포럼 前이사장 정성진 목사

회복의 메시지 :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 프린스턴신학대학원 크레이그 반스 총장

호소문 낭독 : 총회장, 총무, 기관장 전체 등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이정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

결단의 시간 : 사회자의 인도로 순서자 및 지도자들 모두 등단 후 무릎꿇고 통성기도 드림

1. 우리는 결코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2. 우리는 끝까지 세월호 희생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 우리는 하나되어 섬기는 참된 교회 모습을 이루겠습니다.

축 도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 / 공동, 증경총회장 전체

## 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호소문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의 불행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앗아가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쉽게 아물지 못할 아픔을 지닌 희생자 가족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를 바탕으로 다시 펼쳐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을 다짐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1일 연합기도회로 모여 아래와 같이 마음을 모아 호소합니다.

### 1. 당한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우리는 희생자 가족 여러분과 아직도 수습되지 아니한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의 아픔이 증언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행하면서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 2.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하고도 유기적이지 못한 대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희생자와 온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늘의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개인의 도덕성 상실, 나와 다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채 분열을 거듭해 온 것을 회개합니다. 구조적·관행적 비리 앞에 타협해 온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또한 깊이 반성합니다. 이 아픔을 계기로 생명사랑과 정의 구현에 힘쓰고,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참회와 일치연합운동에 동참합니다.

### 4. 구원파의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서지 못함으로 사이비종교의 횡행을 자초했습니다. 기독교로 포장된, 구원파(소위 기독교복음침례회)를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구원파는 교리와 가르침이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 사교집단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는 단호히 이를 배격합니다. 따라서 사직당국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 5. 국민여러분께

세월호 침몰의 참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애쓴 선원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자초한 교사들, 위험을 무릅쓰고 남은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구조관계자 등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불행과 위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난수준의 이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이윤추구에서 생명존중으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성공 지향에서 과정의 중시로, 특혜와 변칙의 관행에서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생활기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자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넘어 회복과 희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희생자들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실 것입니다.

2014. 6. 1.

세월호참사회복을위한한국교회위원회 · 세월호참사 위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 참가자 일동

- 5) 지원
- (가) 일 시 : 2014. 6. 18 (수)
- (나) 장 소 : 안산빛나교회
- (다) 참 석 : 손인웅, 최희범, 조성기
- (라) 지 원 : 20,000,000원
- (매) 내 용 : 안산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재명 목사를 통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및 가족 지원

6) 형제자매캠프 “Memorial and Tomorrow” 지원

- (가) 기 간 : 2014. 8. 12 ~ 8. 13(1박2일)
- (나) 대 상 :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45명, 진행요원 12명
- (다)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내 캐빈유스호텔
- (라) 진 행 : 안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7) 추석명절 사랑나누기

(가) 대상 및 지원내용

- 안산희생자가족262가정-명절음식나누기(1가구당 전 4종 2.4kg, 송편 3종 1kg)  
 음식준비-안산지역여성자활센터, 포장 및 배달-복지관네트워크  
 일반인유가족 43가정-가공육 선물세트, 일반인희생자대책위원회 전달  
 실종자가족 10가정-명절음식나누기

8)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31쪽 참조)

9) 세월호 아픔에 함께 하는 그리스도교 여성 토론회 '세월호 이후의 한국사회와 신앙 여성이 말한다'

- (가)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금) 오후 3시 - 6시
- (나) 장 소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다) 주 최 : 세월호 아픔에 함께하는 기독교여성 연대
- (라) 내 용
- (1) 1부 / 함께 드리는 예배
- (2) 2부 / 세월호 토론회  
 박은희(유가족)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 십자가를 버리다  
 오현선(호신대)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 신학교육적 성찰  
 김혜령(이대) 망각과 기억, 역사를 만드는 선택  
 이은선(세종대) 세월호, 신은 죽었다. 내의 내년의 신은 이렇게 말한다
- (3) 3부 / 마음 나누기

9. <제5회 어버이날 행사> 지원

- 가. 일 시 : 2014. 5. 8(목) 11:30 ~ 14:30
- 나. 장 소 : 새꿈어린이공원
- 다. 참가인원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및 조합원, 주민, 봉사자 등 약 200여명
- 라. 내 용 :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식사 대접

10. 10주년 캠프 지원

- . 일 시 : 6월 6일(금) ~ 7일(토) 1박2일
- 나. 장 소 : 천안상록리조트
- 다. 인 원 : 총 32가족 약 120여명
- 라. 내 용 : 엔젤만신드롬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양육과 치료에 심신이 지쳐있는 부모들과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며 치료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가족캠프에 지원
- 마. 일 정

	시간	내용
6월 6일(금)	14:00~	숙소배정
	15:00~17:00	가족모임 및 레크레이션
	17:30~19:00	저녁식사
	19:00~21:00	가족 전체 모임(웃음치료 및 기타 강연)
	21:00~	취침
6월 7일(토)	08:00~09:00	아침식사
	10:00~12:00	아쿠아피아 및 놀이동산
	12:00~13:00	점심식사
	13:00~	개별귀가

11. 가정폭력피해 다문화이주여성 심리상담 프로그램

가.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13년 12월 10일 ~ 2014년 12월 9일 (1년 간)
- 2) 사업대상 :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71-2) 입주 다문화이주여성

나. 사업내용

- 1) 프로그램 : 생활아카데미 “나는 한국의 알콩달콩 주부입니다”
- 2) 참 가 자 : 총 23명  
유니게의 집 입주자 4명, 의정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 5명, 한울타리 추천 5명, 강사 7명, 스태프 2명
- 3) 세부내용
  - 1회기 : 2014년 6월 12일  
한국의 성문화 : 관승숙 박사(호서대) / 한국의 문화 및 가족관계 : 정인숙(마리공동체)
  - 2회기: 2014년 6월 19일  
나를 사랑하기 : 종서우 교수(서경대) / 살림노하우 : 이규백(북부피해자지원센터)
  - 3회기: 2014년 6월 26일  
요리치료 : 밀반찬 만들기 / 법률상담 : 전종택 법무관(북부피해자지원센터)
  - 4회기: 2014년 7월 3일  
한국문화체험 및 예절교육 : 김태임 원장(호한정다레원)  
외암민속마을

- 5 : 2014년 10월 28일~30일  
힐링캠프(제주 명성아카데미하우스)

## 12. 7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가.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 18일(금)

나. 장 소 : 한서대학교 캠퍼스 (충남 서산)

다. 대 상 : 400명

(자원봉사단체, 센터, NGO·NPO, 학계, 정부, 기업관계자, 관련공무원 등)

라. 주 제 :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회복”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의 역할

마.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바. 세션주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봉공회, 한국자원복지재단, 각당복지재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문화,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사. 후 원 : 안전행정부

아. 세션주제

No	공동기관	세션 주제
1	한국자원복지재단,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불평등사회에서의 자원복지운동의 실천전략 (자원봉사활동의 대안 역할)
2	각당복지재단	위기대처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심리정서적 지원역할
3	대한적십자사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봉공회,	종교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의미
5	한국자원봉사문화, 기업(공공기관)	자원봉사의 ‘커뮤니티 임팩트’ -지역사회안에서 강력한 변화만들기-
6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학회	지금, 왜 다시 자원봉사인가 -공동체운동으로서 자원봉사의 길을 묻다
7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사) 시민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자원봉사운동의 전망과 과제
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대처를 위한 자원봉사 현황과 과제

### 13. 지원

- . 일 시 : 2014년 8월 7일, 20일
- 나. 대 상 : 인천 남구 관내 독거노인 60명
- 다. 내 용 : 삼계탕 배달
- 라. 주 관 : 인천지회-인천희망봉사단 사회복지봉사회

### 14. 2014년 추석맞이 사랑나누기 “따뜻한 이웃”

가. 사업기간 : 2014년 8월 18일(월) ~ 9월 6일(토)

나. 대상 및 지원내용

#### 1) 쪽방주민

##### ○ 동자동

행사명 : '한가위 주민 한마당'

일 시 : 9/6(토) 10:00~15:00

장 소 : 새꿈어린이공원

주 최 : 동자동 사랑방공제협동조합

지 원 : 송편 50kg 지원

##### ○ 창신동

행사명 : '한가위 주민 위로회'

일 시 : 9/6(주일)

주 최 : 등대교회

지 원 : 송편 30kg 지원

#### 2) 원폭2세 환우

대 상 : 14가정

내 용 : 원폭2세환우회 과일세트

#### 3)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

대 상 : 우리집(쉼터)

내 용 : 과일세트 및 외피용약 진통 소염제 방문 전달

#### 4) 다문화가족

대 상 : 중국동포 사랑의집 5가정.

의정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가정.

유니게의집 싱글맘 10가정

#### 5) 엔젤만증후군 환우

대 상 : 58가정

내 용 : 어린이 종합비타민 지원

#### 6)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가) 안산희생자가족262가정-명절음식나누기(1가구당 전 4종 2.4kg, 송편 3종 1kg)

음식준비 : 안산지역여성자활센터,

포장 및 배달 : 복지관네트워크

(나) 일반인유가족 43가정-가공육 선물세트, 일반인희생자대책위원회 전달

실종자가족 10가정-명절음식나누기

7) 탈북민

대 상 : 탈북민 청소년 보호시설 늘푸른청소년미래 4명

내 용 : 운동화 선물

15. 청소년돌봄센터 지원

가. 취 지 :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 및 학업지원

나. 사업주체 : (1) 한국교회희망봉사단  
(2) (사)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3) 연변아리랑서로돕기창업협회

다. 내 용 : 1~8월까지 도서 총 105권 지원

16.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모집 및 참여

가. 일 시 : 2014년 9월 ~ 10월

나. 내 용 :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모집 및 참여 700명

다. 주 관 : 인천지회-인천희망봉사단 북한봉사회 (회장 김명완 목사)

17.

활동

가. 실무위원회의

1) 일 시 : 2014년 1월 17일(금) 14:00

2) 장 소 : 합천평화의집 서울사무국

3) 안 건 : 사무국 단체 및 담당자 선정, 3.1 절을 앞둔 행사 행동 기획 및 업무 분담과 실무 추진일정 논의 등

나. 기자회견

1) 일 시 : 2014년 2월 12일

2) 회견문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심의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올해로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던 삼일절이 95주년이 된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어느덧 69주기를 맞이한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희생된 7만 여 명의 조선인 원폭피해자 중 4만 명은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았다.

69년이 흐른 지금, 원폭피해자 1세는 대부분 사망하였고 현재 2,670여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만이 생존해있다.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까지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며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69년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전모를 규명하는 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각종 소송 투쟁,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국가적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해왔으며, 17대, 18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2012년 12월 7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록의원 대표발의), 2013년 2월 2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5월 20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6월 12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길 요청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을 비롯하여 국내 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년째 계류 중인 4개의 원폭피해자 지원 법안들을 즉각 상정.심사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보건복지부는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라.

- 외교부는 원폭피해자와 후손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본정부에 피해배상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14년 2월 12일

국회의원 이학영, 김정록,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 95주년 3.1절을 맞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1) 일시 : 2월 27일(목) 14: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의실

## 히로시마.후쿠시마 핵의 악몽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는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참사 발생 3주기입니다. 일본정부가 얼마 전 후쿠시마 20km 이내 출입제한을 해제했지만, 지금도 13만 여 명의 주민이 오염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난지역이 아닌 방사능 오염 지대와 그 인근에 남아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사고현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처리를 위해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기와 땅, 지하수, 강과 바다가 어디까지 오염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식탁 안전마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피폭노동자 그리고 피난민들의 아픔에 공감과 위로를 표합니다. 그곳에 유기된 동물들과 모든 생명들에게도,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일본 시민들에게도 그 아픔에의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의 피폭의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핵무기와 핵발전이라는 인류 공멸의 괴물을 확산시키며 또 다른 핵 피해자를 양산해온 전세계 핵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단호한 거부와 반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핵 에너지를 통한 문명의 편익에 길들여져 폭주하는 핵산업의 피해를 막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온 삶의 양식을 돌이켜봅니다.

한국에도 핵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에 의해 피폭되고 희생되었던 한국인 피폭자들과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 대물림되는 후유증과 고통에 시달려온 원폭2세환우들입니다. 우리 한국인 원폭피폭자와 원폭2세환우 그리고 생명과 인권, 평화를 지향하며 원폭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우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 스리마일 그리고 전 세계 곳곳의 핵실험 현장과 후쿠시마에 이어 우라늄 채굴 현장, 전 세계 핵발전소와 각종 핵시설, 핵무기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핵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지속가능한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그 누구도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나날이 피폭되면서 살아갈 것을 강요받지 않도록 피난갈 권리를 국가적 책임하에 보장하고, 이 사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과 주민, 노동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폭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도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책임을 통절하게 인식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제 및 피해배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각국의 핵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더 이상의 핵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핵을 폐기를 하고 탈핵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NO MORE HIROSHIMA ! NO MORE FUKUSHIMA! NO MORE NUCLEAR! NO MORE HIBAKUSHA!**

우리는 후쿠시마 3주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 핵 피해자의 인권 보호 탈핵사회에 대한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사고 실태와 방사능 오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은폐와 왜곡없이 철저하게 공개하여 피해지역 주민과 일본 시민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와 세계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 배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 세계 각국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철폐와 함께 핵 에너지가 아닌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과 대책을 즉각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도 탈핵사회로 가야만 합니다. 핵은 인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은 반생명이며 반인권적입니다. 핵없는 세상, 탈핵 사회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4.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핵 피해자가 있는 세계 각국 정부와 핵 보유국 및 기업은 세계 핵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5. 특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을 만들어낸 일본과 미국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 역시 자국민 원폭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방치하고 외면해온 것을 엄중히 반성하고, 국내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 등 후세대 피해자의 피해진상규명과 면밀한 실태조사, 의료 생활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반인권적인 한일협정 청구권 재협상을 비롯한 모든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3월 7일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합천평화의집

. 김형률 9주기 추모제

- 1) 일 시 : 2014. 5. 24(토) 11:00
- 2) 장 소 :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1층 소극장
- 3) 공동주관 : 김형률추모사업회, 부산민주공원

바. 원폭피해자 특별법 연대회의 전체회의

- 1) 일시 : 2014년 5월 27일(화) 14:00
- 2) 장소 : 합천평화의집 or 평화박물관
- 3) 안건 : 추진연대회의 조직 개편의 건(제안 : 김형률추모사업회 강제숙 공동운영위원장)  
특별법안과 관련한 향후 일정 및 역할분담의 건  
추진연대회의 재정 확보의 건

사. 원폭투하 69주기 성명서 발표

- 1) 일시 : 2014. 8. 6
- 2) 성명서

**고통을 치유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

또 무심히 흘러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어느덧 69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당시 희생된 7만 여 명의 조선인 원폭피해자 중 4만 명은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아 69년이 흐른 지금, 원폭피해자 1세는 대부분 사망하였고, 현재 2,660여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준)만이 생존해있다.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과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며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69년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전모를 규명하는 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각종 소송 투쟁,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국가적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 해왔으며, 17대, 18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2012년 12월 7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2013년 2월 2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5월 20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6월 12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심의안으로 올라가있지만 심의순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 자칫 공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번 19대 하반기 국회에서만은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의 중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조속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폭피해자1세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고령으로 여생의 한을 풀 마지막 기회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원폭피해 2, 3세는 대를 이은 절망을 끊을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고 있다.

진정 역사와 국민에게 떳떳한 국회, 국민의 정부라면 만시지탄이지만 이 분들의 고통어린 세월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은여생과 후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회와 정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길이다.

더 이상 가망 없는 일본 아베정권의 몰역사적인 극우편향의 정책과 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과거 역사에 상처를 입고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우리 자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며, 올바른 자제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특별법을 제정함은 물론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 단교를 불사하는 각오로 가일층 강도를 높이고, 안으로는 국내 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19대 국회는 1년 이상 계류 중인 4개의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 정부는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라.
- 국회와 정부는 원폭피해자와 후손에 대해 일본정부에 피해배상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가일층 경주하라.

원폭투하 69주년 2014년 8월 6일



## 21. 2014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 ·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잔치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11시 ~ 13시

장 소 : 성민교회 (용산구 동자동)

내 용 : 문화공연

(거룩한빛광성교회 국악&기타연주, 타악그룹 「타고」)

도시락 및 선물 증정

자원봉사 : 은평성결교회 28명, 성민교회 5명, 거룩한빛광성교회 3명(공연)

일 정 : 11:00 환영인사

11:10 거룩한빛광성교회

11:30 타고(40분)

12:10 감사인사 및 광고

### 나. 성탄절 온천여행

일 시 : 12월 23일 오전8시 ~ 20시

장 소 : 온양온천

대 상 : 동자동 쪽방주민 40여명

일 정 : 09:00 출발

11:00 외암민속마을 둘러보기, 점심식사

14:00 온양온천랜드

16:30 전통차체험

17:30 저녁식사

20:00 도착

### 다. 취약가정(3가정) 심방

## 22.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 가. 성탄선물나누기

(1) 대 상 : 316가정(단원고학생 및 교사유가족, 일반인유가족, 실종자가족)

(2) 내 용 : 전기온열찜질팩, 목도리2, 양말2, 수제양초2, 수제초콜렛520g, 성탄카드(손편지)

(3) 자원봉사 : 군포제일교회30명

(4) 일 시 : 12월 20일(토) 오후15시~18시 30분

(5) 장 소 : 단원구노인복지관 1층 강당(안산시 단원구 선부동1077-9)

(6) 인 원 : 30~40명(손편지쓰기와 포장30명, 짐나르기8명, 운전2명)

(7) 일 정 : 14:30 분향소

15:00 오리엔테이션(유가족의 현재상황 설명 포함)

15:30 손카드 작성하기

16:00 선물포장, 운반

17:30 저녁식사(도시락)후 해산

### 나. 성탄잔치

(1) 행 사 명 :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안산시민 감사오찬 “0416 기억하고 함께 걷다”

- 일 시 : 2014년 12월 20일(토) 10:30 ~ 13:00  
 (3) 장 소 : 와동체육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3)  
 (4) 내 용

- 주 최 :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
- 주 관 :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안산온마음센터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의제21,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KD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 진행방법 : 세월호 가족들이 그동안 애써주셨던 시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형식. 초청대상은 자원봉사단체, 안산시민대책위 소속 단체, 복지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진도와 분향소에서 급식 청소등 자원봉사를 했던 시민들,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들, 기타 지역 인사들 초청  
 그간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잊지 말고 함께 해달라는 화합의 장으로 오찬과 문화행사 진행  
 초청인원(500명이상)과 세부 문화프로그램은 장소와 예산 확정 후 다음 회의에서 결정

○ 프로그램

- 사회 : 박은희 전도사(예은엄마)

	진행	시간
개회 및 인사	사회자	10:30
개막공연) 연극 "별망엄마"	별망엄마	10:30~11:00 (30)
내빈소개	사회자	11:00~11:05 (5)
인사말) 가족대책위 위원장	가족대책위 위원장	11:05~11:10 (5)
영상(각계 인사 메시지-시장, 의장, 유가족, 시민)	영상상영	11:10~11:15 (5)
어린이 합창(템포가 느린 캐롤 또는 동요)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군포제일교회	11:15~11:25(10)
이야기) 시민자원봉사자 /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복지사 / 복지관네트워크 시민미담사례 / 온마음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네트워크 온마음센터	11:25~11:35 (10)
맺는말) 안산시민대책위	시민대책위 대표	11:35~11:40 (5)
닫는공연) 함께 부르는 노래		11:40~11:45 (5)

- \* 부대행사 : 2015년 희망메세지 달기(희망나무 지장 찍기) / 복지관네트워크  
 동행 0416 모집 및 국민 간담회 접수 부스 운영 / 안산시민대책위

## 23. 2014 지원

### 가. 생태달력 미자립교회 제작 후원

- (1) 내 용 : 미자립교회에 생태달력 보급
- (2) 주 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나. 북한 결핵 어린이돕기 제3회 "생명나눔의밤 콘서트" 후원

- (1) 일 시 : 12월 16일(화) 오후 7:30
- (2) 장 소 : 주님의교회 대예배당

- 주 최 :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 다. 2015년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원
- (1) 대 상 : 재소자 20여명
  - (2) 주 최 :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새가정사
- 라. 2014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연합예배 후원
- (1) 일 시 : 12월 25일(목) 오후 3:30
  - (2) 장 소 : 안산세월호합동분향소 야외무대
  - (3) 주 최 : 2014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 감 사 보 고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우리 감사인들은 2015년 1월 22일 10시 30분부터 귀 기관의 2014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5. 01. 22.

감사 김 광 한 (인) 

감사 박 홍 자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 감 사 의 견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1. 수입지출금액 검토 (전년도 이월금 포함)

(단위:원)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전년도이월금	206,831,878	364,639,286	-157,807,408
수 입	678,501,288	559,020,121	119,481,167
지 출	480,516,529	716,827,529	-236,311,000
잔액(년도이월)	404,816,637	206,831,878	197,984,759

※2014년 지출 증 진행하고자하는(세월호유가족돌봄 등)사업에 대하여 준비 단계 및 사업검토에 따라 전년대비 지출경비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짐.

※지출내용 검토한바 세월호침몰에 따른 구호사업(127,337,980원)으로 주로 사용되었음.

(1) 수입내용 지출 내용을 관계대장, 통장, 증빙서류 등 대조 확인한바 정확하게 정리되었음.

(2) 전표결재상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란이 비어 있는 건수가 상당수 있음.

## 2. 업무처리 위임전결규정

(1) 업무처리 단계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위임전결 규정 제정활용을 권합니다.

(2) 업무처리 과정에서 품의서와 입출금 전표상 결제의 경중에 따라 업무처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014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2013년 이월금	산 출 근 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206,831,878	전년이월금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 근 거 (비고)
회비	회비	일반회비	78,545,000	임원 및 회원 정기회비
후원금	후원금	사업후원금	84,500,000	사업후원(설날,부활절,추석행사,성탄절,썬터지원)
		경상비후원금	20,950,000	사무국운영후원금
		일반후원금	95,091,879	일반후원금(아카데미수강료,미장로교,기업은행)
		지정후원금	6,600,000	지정후원금(하나은행다문화지원,SK인천지회)
		세월호위로회복후원금	374,496,901	지정후원금(세월호위로회복후원금)
		물품후원금	953,820	연변탈북자자녀도서후원
잡이익	잡이익	이자수입	282,837	예금에대한 이자수입
		잡이익	6,624	원단위 할인 외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2,130,220	선급법인세 환급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13,959,91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분 공제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845,700	법인카드사용분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138,397	더존블루멤버쉽유지보수비(연)13년환입금
총 계			<b>678,501,288</b>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 근 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임대관리비	38,366,400	사무실, 복사기 임대관리비	
		통신비	1,683,154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9,659,120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세	
		운반비	118,500	퀵, 택배 사용료	
		도서인쇄비	830,450	회보제작, 신문구독료, 도서 구입	
		소모품비	794,945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여비교통비	3,264,700	월정/시간주차료, 통행료	
		지급수수료	7,758,410	CMS 관련 / 회계사기장 / 송금 수수료 등	
		차량유지비	687,000	주유비, 차량정비비	
		수선비	12,000	냉장고 수리	
	소 계			63,174,679	
	업무비	업무비	업무추진비	695,337	업무 관계자 미팅시 식사 및 다과비
			회의비	443,520	임원회의 및 각종 회의비
			소 계		
	인건비	인건비	급여	82,427,915	직원 급여
			상여	47,371,714	직원 상여
			복리후생비	11,395,070	건강보험료, 직원 및 손님 식대 외
			잡비	96,800	기타소득세(디아코니아집중과정-정재영)
			소 계		
	합 계			<b>205,605,035</b>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사업비	기획사업비	설날사랑큰잔치	9,891,460	설날사랑큰잔치 행사 진행 비용
		정대협사업지원	25,672,000	정대협 사업지원 비용
		원폭및방사능누출피해자지원사업	1,252,000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 진행 비용
		죽방.주거위기가정돕기	920,000	주거위기가정돕기 사업진행 비용
		다문화.이주민지원	10,270,050	지구촌사랑나눔(이주민)행사 진행 비용
		연변탈북자자녀돕기	953,820	연변청소년돕기 사업 진행 비용
		장애인사업지원	3,177,800	엔젤만중후군가족모임캠프지원
		디아코니아센터설립.지원	10,000,000	디아코니아센터지원사업 진행 경비
		디아코니아아카데미	26,379,258	디아코니아아카데미사업 진행 경비
		부활절사업	8,226,640	부활절 행사 진행 비용
		거리의성탄절	8,111,740	거리의성탄절 행사 진행 비용
		세월호참사위로회복	127,337,980	세월호참사위로회복 진행경비
	소 계	232,192,748		
	기타사업	사업추진비	4,986,000	사업관련 업무추진 비용
		행사비	755,400	2014총회 진행 비용
		직원교육(연수)사업	884,600	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외
		기타사업	3,700,000	유관기관 행사후원금 및 연회비(한봉협) 외
		협력사업	6,077,725	필리핀재해구호연합협력사업
		소 계	16,403,725	
	조직사업비	분야별사업단조직	50,000	분야별사업단 조직 준비비
		영역별협의체조직	600,000	영역별협의체 조직 준비비
		지회강화및설립	5,600,000	지회강화 및 설립 준비비
		네트워크강화	1,718,500	네트워크강화 및 준비비 및 유관기관 강화비
자원봉사네트워크조직		650,000	자원봉사 네트워크강화 경비 외	
소 계		8,618,500		
<b>합 계</b>		<b>257,214,973</b>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집기비품	906,000	사무실 비품(컴퓨터2대)구입
		선납세금	21,950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 계	927,950	
<b>합 계</b>		<b>927,950</b>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4	원단위절사 외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15,278,13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공제분 납부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1,490,437	법인카드사용분(전월)
<b>총 계</b>			<b>480,516,529</b>	

2014년 결산	이월금	206,831,878
	총수입	678,501,288
	총지출	480,516,529
	잔액	404,816,637
지정기금	기본자산	33,620,000
	퇴직연금적립	18,429,421
	북한재해구호	107,826,561
	세월호위로회복	230,000,000
<b>총잔액</b>		<b>14,940,655</b>

## F. Korean Diakonia 2015 사업계획

### 1. 돌봄 및 네트워크사업

#### 가. 직원 현장파견

- (1) 기 간 : 2015년 3월~2017년 2월(24개월)
- (2) 주요업무 : 안산지역 희생자가족 돌보미로 형제자매 및 생존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멘토링, 학습 및 취미 여가활동지원, 지역필요에 따른 기타 업무 수행

#### 나. 희생자유가족 캠프/일반인희생자유가족 위로캠프

- (1) 대 상 : 희생자 형제자매 및 생존학생 60명/일반인희생자가족 5가정 20명
- (2) 일시장소 : 2015년 8월 1박 2일, 인천 강화도 (예정)

### 2. 엔젤만신드롬(희귀난치성질환) 환우 지원

#### 가. 어린이종합비타민지원

- (1) 대 상 : 엔젤만신드롬 환우 70명(연 2회 6개월분)
- (2) 일 시 : 2015년 어린이날, 성탄절

#### 나. 가족캠프지원

- (1) 일 시 : 6월 5일(금) ~ 6일(토) 1박2일
- (2) 장 소 : 천안상록리조트
- (3) 인 원 : 총 32가족 약 120여명
- (4) 내 용 : 엔젤만신드롬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양육과 치료에 심신이 지쳐있는 부모들과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며 치료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가족캠프에 예산 일부 지원

### 3. 서해안 자원봉사 기념비 보수

가. 상 황 : 2011년 12월 5일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4주기에 설치한 한국교회자원봉사기념비가 자외선 손상으로 보수가 필요함.

나. 내 용 : 만리포교회, 신두성결교회, 의항교회, 천리포교회, 파도리교회, 학암포교회에 설치한 기념비 6점 보수  
다. 일 정 : 2015년 3월

### 4. 협력사업

#### 가. 쪽방촌 주민(동자동) 교육지원

- (1) 대 상 : 동자동 주민
- (2) 기 간 : 2015년 1년간
- (3) 내 용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의 신규조합원, 기성조합원, 임원들의 주민교육필요에 의하여 매월 1회 진행
- (4) 주 관 :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장 이태헌)

- . 일본 위안부피해할머니 쉼터 ‘우리집’ 운영비지원  
주 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윤미향, 복지사 손영미)
- 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운영위원단체 활동  
내 용 : 운영위원단체로서 입법활동  
연대회의 운영비지원  
사업진행시 공동주관 및 사업비 지원

5.

- 가. 대 상 : 세월호희생자가족  
쪽방주민  
의정부화재사고피해자  
원폭2세환우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
- 나. 내 용 : 설날, 부활절, 추석, 성탄절에 소외된 이웃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고 선물 전달

## < DIAKONIA KOREA(엑스포) > 사업계획

### 1.

- . 사업명 : 한국기독교사회복지EXPO < DIAKONIA KOREA >
- 나. 취지 : 한국교회의 사회복지/봉사/섬김 영역별 대표적 사역의 지평과 전문성을 가늠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섬김과 나눔이 가진 교회론적 당위성을 축제의 형식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함
- 다. 일시장소 : 2016년 10월 15일(토) ~ 21일(금) / 사랑의교회
- 라 개최영역/주관교회
- (1) 전야제, 개폐회식, 메인행사, 디아코니아 컨퍼런스, 부스 - ○○교회
  - (2) 북한주민/탈북민 - ○○교회
  - (3) 장애인/여성/다문화 섬김 - ○○교회
  - (4) 재난구호/자원봉사 - ○○교회
  - (5) 해외원조/개발 - ○○교회
  - (6) 사회적폭력 치유/화해 - ○○교회
  - (7) 경제적 소외계층 지원/협력 - ○○교회
  - (8) 아동/청소년/노인 섬김 - ○○교회
  - (9) 공동체/문화 섬김 - ○○교회
  - (10) 생태/환경 섬김 - ○○교회
  - (11) Diakonia 학술/출판 - ○○대학교
  - (12) Diakonia 국제협력 - ○○교회
- \* 각 영역나눔 및 주관교회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실제는 아닙니다.
- 마. 주최 : DIAKONIA KOREA 조직위원회
- 바. 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  
행사주관 교회/학교/기관
- 사. 후원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2. 사업방향

- 가. 기존 '사회복지'로 한정되었던 영역을 재난구호, 자원봉사, 해외원조, 사회적 화해 등 한국교회의 전반적 사회 섬김과 나눔(Diakonia)의 영역으로 확장
- 나. 사무국과 행사개최교회에 집중되었던 각종 행사 주관을 각 교회 및 기관, 기독교대학 등으로 분산하고, 영역별로 주관교회/기관이 조직위 사무국과 공동으로 각각 영역별 행사를 기획 단계부터 준비하고 함께 주관함
- 다. 각 영역별로 음악회, 전시회, 바자회 등 문화행사와 해당영역 세미나, 공개토론, 좌담회 등의 행사 개최
- 라. 조직위 사무국과 각 영역별 주관 교회/기관은 각 영역별 행사 일시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무국은 각종 행사 및 개폐회식 전야제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제작 배포

- . 메인행사 주관교회는 아래와 같은 행사 및 사업 진행
  - (1) 전야제, 개회식, 폐회식
  - (2) 부스 설치
    - 국내외 Diakonia 기관 홍보 부스 - 각 기관별 기부자 모집 병행
    - 성서공회 기독교서회 찬송가 공회 등 국내외 기독교 연합기관 홍보부스
    - 기독교 관련 생협, 공동체, 사회적기업 홍보부스
    - Diakonia Korea 영역별 행사 홍보 부스
    - 기독교관련 출판사, 협동조합, 학교, 금융상품, 교회건축, 교회용품, 관련제품 홍보부스
  - (3) 행사기간 내 매일 축제 성격의 문화행사 및 Diakonia 전반의 정책관련 토론회 개최
- 바. 한기사협 각 지역별 지회에서 지역별 <Diakonia Korea / 섬김한국> 동시 개최 적극 유도

## <DIAKONIA KOREA(엑스포)> 2015년 사업계획

### 1. DIAKONIA KOREA

#### 출범식

- 가. 일시장소 : 2015년 3월 하순(장소 협의 중)
- 나. 대 상 : DK 조직위원 및 교계 지도자
- 다. 내 용 : 조직위원 임명, 주관교회 발표, 실행위원회/집행위원회 구성

### 2. 집행위원회 워크숍

- 가. 일시장소 : 2015년 4월 하순(1박 2일, 장소 협의 중)
- 나. 대 상 : DK 집행위원회, DK기획 TF팀, 사무국
- 다. 내 용 : DIAKONIA KOREA 본대회, 영역별대회 기본방향/컨셉 브레인스토밍

### 3. 정책문서작성위원회 가동

- 가. 일 시 : 2015년 5월 중
- 나. 대 상 : 신학자, 사회복지관련 학자, 유관기관 대표 등 30여 명
- 다. 내 용 :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2016 DIAKONIA KOREA/한국교회봉사단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 등 정책관련 문서 작성

### 4. 대회 엠블럼 제작 및 홍보시작

- 가. 일 시 : 2015년 6월 중
- 나. 내 용 : 대회 엠블럼 제작/선정, 홍보대사 위촉, 홍보브로셔 제작 등

### 5. 한국교회 DIAKONIA 다큐멘터리 제작

- 가. 일 시 : 2015년 6월부터
- 나. 대 상 : 한국교회 DIAKONIA 사역을 감당 중인 대표적인 20교회
- 다. 내 용 : 방송용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 관련 원고 저술 및 출판

### 6. DIAKONIA KOREA 목회자대회

- 가. 일 시 : 2015년 11월 중
- 나. 대 상 : DIAKONIA 목회와 사회적 나눔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 신학생, 성도 등
- 라. 내 용 : DIAKONIA 나눔을 주제로 한 영성집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 7. DIAKONIA 영성자료 개발 및 보급

- 가. 일 시 : 2015년 10월(개발), 11월(출판 및 보급)
- 나. 대 상 : 한교봉 회원교회, 조직위원 교회 및 기관 및 전국교회
- 다. 내 용 : 교회론적 DIAKONIA 사역의 당위성을 기반으로한 교재 개발 및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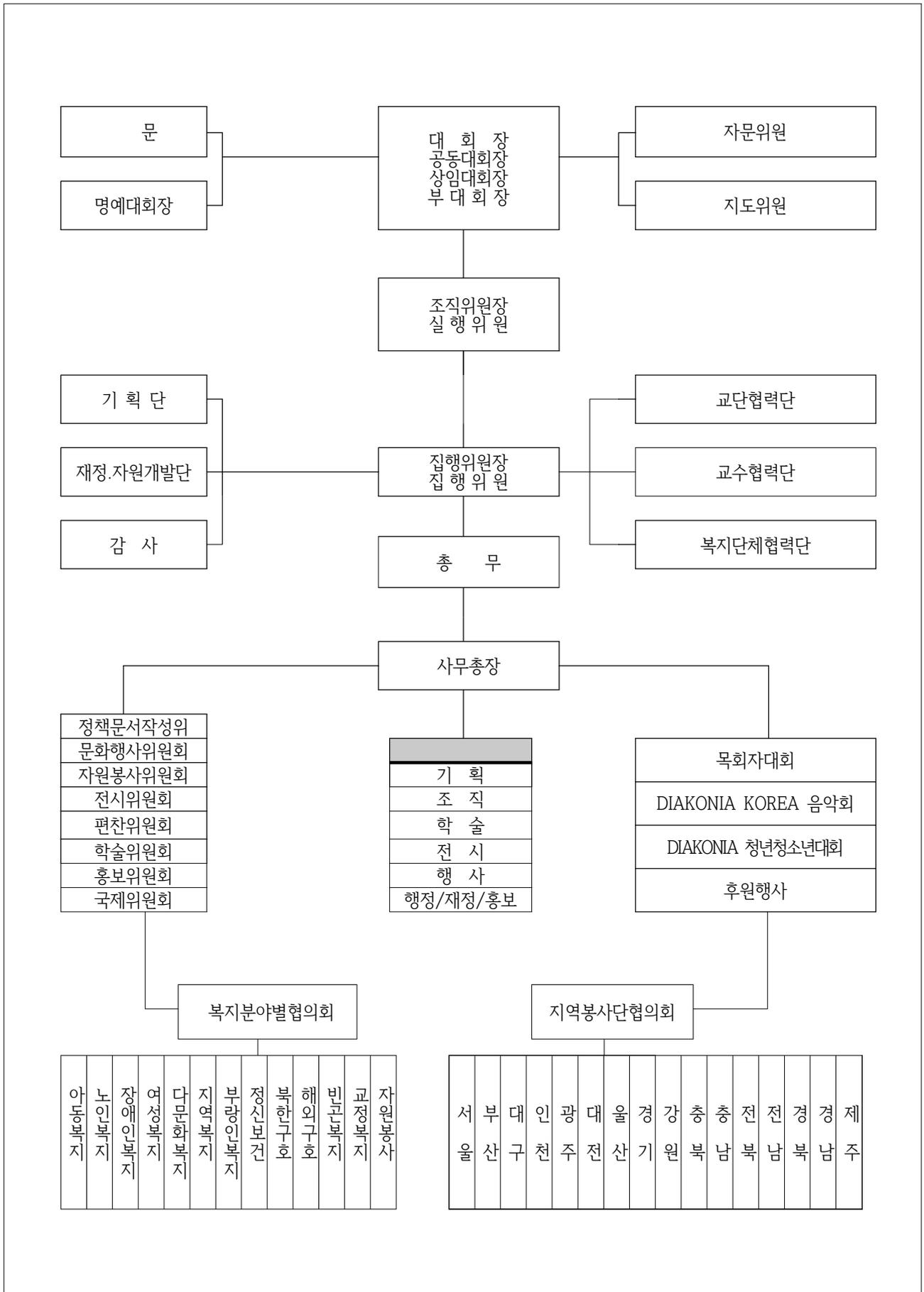
### 8. DIAKONIA 아카데미

- 가. 일 시 : 2015년 10월
- 나. 대 상 : DIAKONIA 영성자료(교재) 사용예정 교회의 교역자, 교사, 구역장
- 다. 내 용 : 영성자료 집필진을 강사로 6주과정의 아카데미 개설

# 2016 DIAKONIA KOREA Road Map

	업무내용	2015												20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	구성/활동			→																			
2	해외 게스트 초청												■	■									
3	영역별 주관교회 선정		■	■	■																		
4	조직위 출범식		■	■																			
5	집행위 활동시작			→																			
6	집행위 워크숍		■	■																			
7	대회 엠블럼 선정					■	■																
8	정책문서 작성위 활동					■	■	■	■	■	■	■	■	■	■	■							
9	정책문서 발표															■	■						
10	Diakonia 영성자료 개발/보급					■	■	■	■	■	■	■	■	■									
11	Diakonia 아카데미												■	■									
12	홍보시작							→	→	→	→	→	→	→									
13	전시참여기관 모집							→	→	→	→	→	→	→									
14	영역별 대회 준비														→	→	→	→	→	→	→	→	
15	강사 선정/섭외																						
16	한국교회 Diakonia 다큐멘터리 제작							→	→	→	→	→	→	→									
17	Diakonia Korea 목회자대회												■	■									
18	전시 업체 선정																						
19	Diakonia Korea 음악회																■	■					
20	가이드북 제작																				■	■	
21	Diakonia Korea 후원행사																	■	■				
22	Diakonia 청년청소년대회																				■	■	
23	전시참여 기관 OT																				■	■	
24	옥외 홍보																					■	
25	발대식																					■	
26	2016 DIAKONIA KOREA																					■	
27	보고서/자료집 발간																					■	

# DIAKONIA KOREA(엑스포) 조직도



## 2016 DIAKONIA KOREA(엑스포) 조직위원회 명단

구분	명단	
명예대회장	김장환 목사,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고문	곽선희, 김동권, 김명혁, 김범일, 김선도, 김장환, 림인식, 박경조, 박종순, 서기행, 손봉호, 신경하, 안영로, 이광선, 이동원, 이종윤, 장차남, 조용기, 주선애	
지도위원	감경철, 강승삼, 고 훈, 고용수, 김득린, 김명규, 김상복, 김성이, 김수지, 김인환, 박래창, 서재일, 신화석, 안용원, 우창록, 윤석전, 윤종관, 이봉관, 이수영, 이용남, 이용호, 이정익, 이제훈, 이종복, 이흥순, 장희열, 전광표, 전병금, 전병호, 정철범, 조규환, 조성철, 조종남, 최낙중, 최성규, 최학래, 추연호, 홍정길 현직 교단장 25인	
자문위원	4개 언론사	CBS(이재천 사장) CTS(감경철 회장) 극동방송(김장환 이사장/한기봉 사장) 국민일보(최삼규 대표이사 사장)
	단체장	김정규, 김형석, 박종삼, 서정인, 양오현, 이 순, 이승영, 이일하, 정정섭
	학계	김대근, 김영길, 김한중, 김형태, 신일희, 이배용, 장종현
	기타	YMCA대표(남부원), YWCA대표(차경애)
대회장	김삼환	
공동대회장	권태진, 김경원, 김동배, 김양원, 박은조, 박종삼, 박종덕, 박종화, 서재일, 송기성, 양병희, 이성희, 이영훈, 이철신, 조성기, 지형은, 진희근, 최홍준, 피영민	
상임대회장	손인용	
부대회장	고명진, 김봉준, 서정오, 소강석, 오정호, 유만석, 이운재, 정성진, 최이우, 한태수	
조직위원장	오정현	
실행위원회	KD임원, 영역별 주관교회 담임목사, 교수, 사무총장	
집행위원장	권태진	
총무	정성진	
집행위원회	영역별 주관교회 사업책임자, 교수, 사무총장	
기획단	김창곤, 김한호, 송종완, 우순태, 이상화, 이성구, 이승열, 이효상, 장현승, 주현신, 최명우, 한상업,	
교단협력단	교단 총무 및 사회봉사/복지 부서 책임자	
교수협력단	김동배, 김성철 김기원, 김범수, 노충래, 오정수, 이만식, 전광현, 정무성, 현외성, 등	

구분	명단
복지단체협력단	김양원(단장후보) 김일환(기사봉), 신용규(복지관), 한상엽(연봉), 아동(생활, 지역아동센터 박경양), 노인(여가, 재가, 생활), 장애인(지체-김양원, 시각, 언어청각-손원재, 발달 등), 다문화(김해성, 박천웅), 노숙자(급식-안기성, 쉼터) 외
지역봉사협력단	16개 지회대표
재정자원개발단	이봉관 외
감사	김광한, 임성이
서기, 부서기	김종생, 박순영
회계, 부회계	이창연, 박홍자
사무총장	천영철

※ 이하 추후 임명

위원 회	정책문서작성위원회	
	문화행사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전시위원회	
	편찬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대회	목회자대회	
	DIAKONIA음악회	
	청소년대회	
	후원행사	

G. Korean Diakonia 2015 예산 (안)

Korean Diakonia 2015 예산 ( )  
(2015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수입부 ( : 원)

관	구 분	2013년 결산금액	2014년 결산금액	2015년 예산금액
회비	회 비	112,190,053	78,545,000	112,000,000
후원금	경상비후원금	155,400,000	20,950,000	156,000,000
	사업후원금	226,143,862	561,642,600	250,000,000
	디아코니아코리아	0	0	210,000,000
잡수입	잡수입	1,016,782	289,461	1,000,000
총 계		493,733,915	661,137,600	729,000,000

※2014년 사업후원금은 '세월호위로회복' 후원금(3억7천만원)포함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15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64,000,000
	인건비	190,000,000
	소 계	254,000,000
사업비	세월호희생자가족 돌봄 및 네트워크사업	90,000,000
	엔젤만신드롬(희귀난치성질환)가족모임지원사업	13,000,000
	서해안자원봉사기념비 보수	3,000,000
	협력사업(쪽방촌주민, 위안부할머니, 원폭피해자)	45,000,000
	사회적소외계층지원사업(설, 부활절, 추석, 성탄절)	55,000,000
	디아코니아코리아(엑스포)기획 및 진행	210,000,000
	기획사업비	43,000,000
	구호사업비	10,000,000
	조직사업비	6,000,000
	소 계	475,000,000
	총 계	729,000,000

## H.

### 1.

#### 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Council of Christian Social Welfare’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에 둔다.
-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
  2. 대전지회: 대전시 서구 정림동 637번지 정립종합사회복지관 내
  3. 부산 경남지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697-2 반송종합사회복지관내
  4. 대구 경북지회: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 내
  5. 광주 전남지회: 광주시 오치2동 1003번지 오치사회종합복지관내
  6. 인천지회: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9-6
  7. 경기남지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50-10
  8. 충북지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35번지
  9. 충남지회: 충남 천안시 백석동 11-12번지
  10. 울산지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346번지
  11. 경기서지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54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 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교단회원: 기독교 각 교단
- 2) 단체회원: 교회 및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 3) 지역협의회원: 전국 시도별 지역협의회
- 4)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감사 2인

4. (회장을 포함한다.) 19인

**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전문사업단을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5-2조(대의원)

-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장 사무 부서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2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36-3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 제8장 보 칙

제48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7월 10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개정

## 2.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한국교회희망봉사단 회칙

####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라 하며 대외호칭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 이웃에게는 평화를 . 한국교회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사회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2. 국내 . 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3.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4. 한국교회 사회복지엑스포 및 총람 편찬
5. 기부 문화 확산 사업
6. 기독교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 활동
7. 국내 . 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홍보 및 출판
9.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교단, 교회,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허락되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언권과 의안 제출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의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과 제반 규정 준수

2. 의결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 3장 중앙위원회

**제8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교단, 교회, 직능, 지역별 대표 200여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원회의 추천과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10조 (직무)** 중앙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2. 법인이사 인준
3. 실행위원 인준
4. 임원 및 감사 인준
5. 회칙개정
6.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7.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8.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9. 임시 중앙위원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1조 (소집)**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1/3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 중앙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4 장 실행위원회

**제13조 (권한)** 본회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두며 중앙위원회가폐회 중일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대행한다.

**제14조 (구성)** ① 본회의 회원 중 교단, 교회, 단체(직능, 지역), 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② 실행위원은 임원회가 추천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직무)** 실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및 예산 결산 심의
2. 임원 및 감사 선임
3. 사무총장 선임
4. 회칙 개정 심의
5.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의결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
7.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및 의결

**16조 (소집)**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이 분기별로 소집하며 7일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수)** ① 실행위원회는 출석위원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5 장 임원회 및 감사

**제18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1. 대표회장 : 1인
2. 공동대표 : 약간 명
3. 단    장 : 1인
4. 총    무 : 1인
4. 서    기 : 1인, 부서기 : 1인
5. 회    계 : 1인, 부회계 : 1인

**제19조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의 선출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무는 임원회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임원과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표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 나. 공동대표 :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다. 단    장 : 본회의 각종 사업 추진을 관장한다.
  - 라. 총    무 :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에 참석한다.
  - 마. 서    기 : 회의록과 관계 문서의 기록과 보관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 바.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사. 회    계 :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 아.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
  - 나. 각 위원회의 사업을 독려 . 지원
  - 다.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결의

**제21조 (소집)** ① 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7일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할 시는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으나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22조 (성수)** ①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의 선임 등)** ①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위원회 . 실행위원회 . 임원회를 감사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 2. 사무처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 3. 감사결과를 임원회, 실행위원회,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이사회

**제24조 (구성과 운영)** ① 본회 법인체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라 칭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7 장 위원회 및 지회

**제25조 (기획위원회)** 본회의 장·단기 발전과 본회가 해야 할 과제를 연구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위원회를 둔다.

- 1. 기획위원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 2. 기획위원의 수는 9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기획위원회는 수시로 회집하며 계획서(안)를 대표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위원회)**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 1. 사업위원회
  - 가. 재해구호위원회
  - 나. 사회복지위원회
  - 다. 학술위원회
  - 다. 국제위원회
  - 라. 자원봉사위원회

- . 북한지원사업위원회
- 사. 홍보·출판위원회
- 아. 사회복지엑스포위원회

2. 각 위원회는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과 조직 구성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7조 (지회)** ① 본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도 지회를 두도록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자문회의 및 협의회

**제28조 (자문회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회의를 둔다.

1. 고문단 : 교계의 원로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2. 자문위원회 : 교단장 및 단체장

**제29조 (협의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협력적으로 전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 지역협의회 : 본회의 지회 대표로 구성하여 사업과 운영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2. 유관기관 협의회 : 봉사과 복지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연대를 이루도록 한다.
3. 총무단협의회 : 유관 교단이나 기관의 사회봉사 관련 실무자로 구성하며 본회 업무를 협의한다.

## 제 9 장 재 정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후원을 위한 기부금
3. 교회·기관·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4. 기타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10장 사 무 처

**제32조 (설치)**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어 상근케 한다.

**제33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임원회가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총무를 보좌하며 직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제반회의에 참석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4조 (직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장 보 칙

제35조 (회칙의 개정) ① 개정 발의는 실행위원회·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6조 (세칙 및 제반규정) ① 본회 회칙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제반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와 임원회가 발의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7조 (회의록 등) 임원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해당 회의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38조 (기관의 설치 및 협력) 본회의 목적사업 시행과 추진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하거나 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39조 (미비사항의 보완)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보완한다.

##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5월 12일 제정  
2010년 1월 29일 개정